

특허분쟁의 필승전략(2)

형사 고소의 이해와 활용

1. 들어가는 말

프랑스의 빠리에는 프랑스혁명 당시 사용하던 단두대가 남아 있는데 많은 외국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단두대에 목을 걸쳐보며 섬찟한 스릴을 느끼거나 공포정치의 역사에 몸서리친다고 한다.

형사고소나 고발은 벌금형으로부터 징역형, 사형에 이르기 까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흔히 사람들은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묻곤한다. 그들에게 민사는 두렵지 아니하고 형사는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형사고소는 이처럼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막상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고소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법경찰관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법률구제수단인 형사고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고소의 진행이 자기 의사와 달리 이루어질 때 허탈감과 법에 대한 불신감마저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변리사에 게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는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암기하고 법이론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알아야 한다.



박형준
변리사
<아시아나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목 차

1. 특허분쟁의 이해와 기본전략
2. 형사고소의 이해와 활용
3. 특허침해에 대한 공격전략
4. 특허공격에 대한 방어전략

(그뒤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

그것은 법이 규정하는 일과 법이 흐르는 길, 법의 집행자가 가는 길에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규정을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 속하고 법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

법의 마음이나 법 집행자의 마음을 글로 쓰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도 공공연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누구나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것도 글로써 알리는 일이 쉬울 까닭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때 이 글에서 형사고소에 숨겨진 커다란 법의 마음과 법 집행자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다.

형사고소와 고발은 형법과 특별형사법, 여러가지 행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두루 해당하는 법률구제절차이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 하기로 한다.

2. 형사고소의 일반 처리절차

잘 아는 바와 같이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告發)이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 하는 것이지 부탁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와 고발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고소는 대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문서가 아닌 말로써 고소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급박한 경우라면 말로써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고소는 상대방(특허권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하는데 사실은 범죄발생지(특허권 침해 장소) 관할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다. 고소장의 제출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다. 또한 고소장을 고소인(특허권자) 관할의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송된다. 급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 보충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소인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다. 서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다만 검찰청에 고소한 경우 검찰에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를 지시하기도 한다(검사 지휘사건이라고 부른다).

초동수사기관인 경찰은 수사결과를 정리하여 수사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다. 범죄가 중대하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경찰수사의 잘못된 점과 미비점을 보강수사 하게 된다. 그리하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재판에 회부)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한다.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사건을 수사단계를 떠나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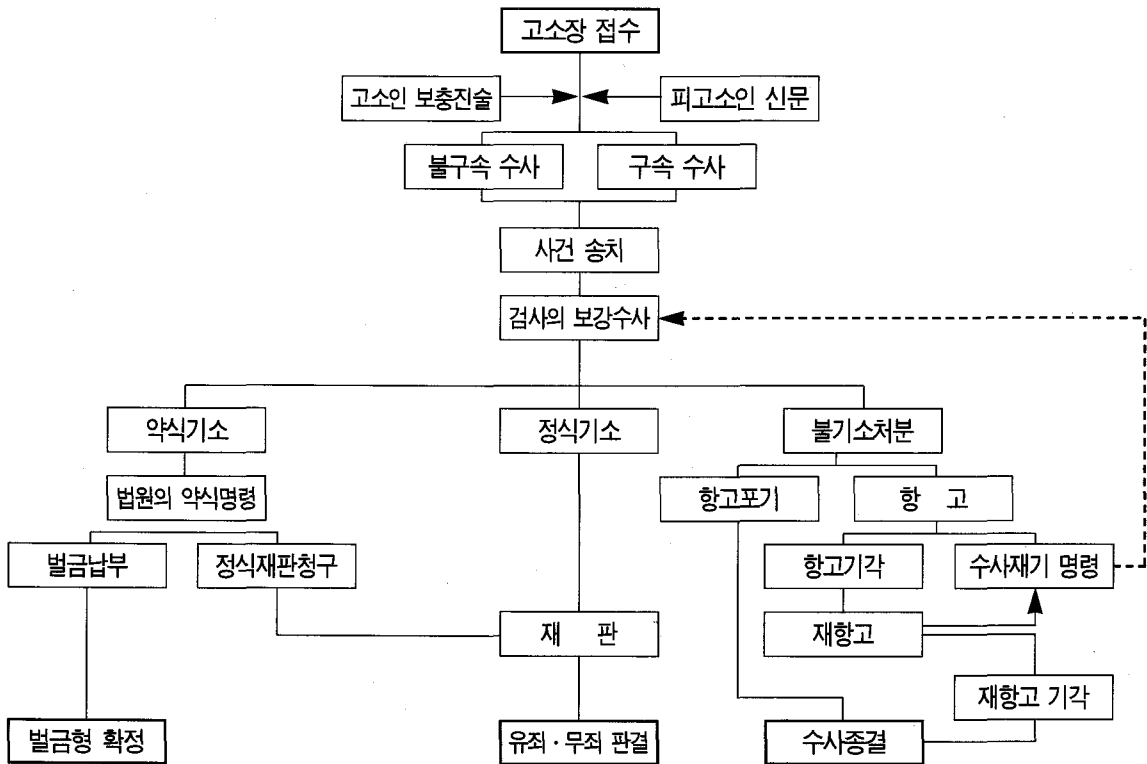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특허권자)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재기 수사명령)을 하거나 항고를 기각하게 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 결과 재기수사

명령이 내리게 되면 고소인은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리면 더이상 다룰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절차가 고소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이며 이를 알기쉽게 도표로 나타낸것이 <표1>이다

<표 1>



3. 고소장 작성의 요령과 주의사항

고소장의 표지에는 ○○경찰서장 귀하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 귀하라고 기재하고 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고소인이름, 범죄명만을 간단

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여백은 수사기관의 접수인과 사건번호 등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다.

고소장 표지의 다음장에는 피소고인의 인적사항, 범죄명, 적용법조를 차례로 기재한다. 주소와 더불어 전화번호를 함께 적는 것이 좋다. 그것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보다 전화를 하는 것이 손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연이어 '고소범죄사실'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고소인의 권리관계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법률규정을 차례로 기재하되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한다.

증거물로 사진이나 영수증, 현품 등을 첨부하거나 고소인보충진술서 직접 제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2>에 가상적으로 예시한 고소장을 소개한다.

<표 2>

<p>○○○경찰서장(검찰청 검사장)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소 장</p> <p>피고소인 : 홍길동(전화:45-6789) 충북 진천군 사랑면 78</p> <p>고 소 인 : 임격정(전화:543-4567)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1-31</p> <p>범 죄 명 : 특허법위반(특허법제 225조)</p> <p style="text-align: center;">- 고소범죄사실 -</p> <p>1. 고소인은 발명특허 제1234호 '여과장치'의 특허권자이다. 2.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특허법 제225조에 의하면, ...5년이하의 징역..., 피고소인을 엄벌 바랍니다.</p> <p>증거방법 : 특허원부등본, 특허공보사보. 1997. 7. 7</p> <p style="text-align: right;">고소인 임 격 정 ⊙</p>

<표2>의 고소장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부실한 내용의 고소장은 수사관을 짜증나게 하며 수사미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수사관이 알아서 철저히 수사해줄기를 바라는 것은 철저한 범죄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소장의 부실한 작성이 수사진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가. 특허의 출원일, 공고일, 등록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특허기술의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침해사실에 대한 일시와 장소, 수량, 제조 또는 판매금액을 조목조목 기재하고 공범자 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제시한다. 침해 사실은 고소의 핵심사항이므로 매우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재된 침해사실을 근거로 '수사미진'을 제출할 수 있다. 기재된 침해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적무유기'가 된다. 기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수사미진'이 될 뿐이다.

다. 침해액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추산'하여 기재한다.

혹시 과장된 침해액수로 인하여 '무고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버리는 것이 좋다. '단정(斷定)'이 아닌 '추산(推算)'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 법률조항은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와 '특허권의 내용', '실시'의 정의에 관한 것까지 해당하는 것은 낱낱이 찾아 기재한다. 그것은 산업재산권 침해를 자주 접하지 못한 수사관이 법률규정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특허권을 침해한 '곡물분쇄기'를 구입하여 방앗간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방앗간 주인을 고소하였다고 하자, 고소인은 '사용'도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항변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라디오를 사서 듣는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제조자가 아닌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사관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방앗간 주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법률해석의 착오와 혼란을 잡아 주기 위해서 상세한 법률 규정과 해석을 기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 증거는 수집되는 대로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상대방의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을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다. 증거의 제출 즉, 범죄사실의 추가는 검사가 침해자를 재판에 회부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4. 고소인 진술의 요령

수사기관은 고소가 제기되면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의 고소내용을 자세히 묻고 확인한 후 이를 조서로 작성하고, 다시 피고소인을 불러 범죄사실을 가려내고 추종한다. 피의자 신문(訊問)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고소의 이해와 활용을 설명하는 경우이므로 고소인의 입장인 고소인 진술 요령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사람이 만만히 보이면 될일도 안되고 만다. 고소인이 애원하는 태도를 가지거나 감정만 앞세우는 경우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만만히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용사처럼 단호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훌륭한 전략가처럼 사건과 법률 규정을 꿰뚫어 보고 흔들림없이 진술에 임해야 한다. 법률의 집행자가 가진 저울은 힘과 정당성의 총합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정당한 사

람이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권세 없거나 가난한 자가 오히려 법에 말려 고생하는 까닭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수사관은 법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은 당연하다. 무릇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입장이 차이나므로 공정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수사관의 공정성만을 요구하기 보다 수사관이 공정해 질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권익이 유린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를 유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고소인이 취해야 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 수사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이 서면 수사관에게 직접 항의해서는 안된다.

‘잠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자유로운 진술분위기를 얻은 후 자기 주장과 주장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정중하고 단호히 말함으로써 수사관에게 간접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하고 진술을 제한하거나 유도신문 하는 경우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는 ‘대리인 변리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답변에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 중요한 답변은 ‘대리인 변리사의 판단을 구한 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와 같이 답변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으로 방패삼아야 한다.

라. 수사관이 관례적으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받아오시오’ 하고 요구했을 때 ‘만일 상대방이 반대감정서를 받아온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고 항변하여 수사관이 기술적 법률적 판단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설사

감정서를 제출한다 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감정서가 자기권리를 방어하는데 꼭 소용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수사관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자신은 물론 수사관에게도 유익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조용히 끝나지 않고 수사관에게도 법률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강한 인상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바. 진술이 끝난 후 조서의 말미에 서명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기록이며 검사의 공소장(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범죄사실의 결론적 내용을 기록한 문서)의 기초가 되고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자기의 의사와 달리 기재된 조서는 수정하지 않는 한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권리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5. 침해증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 방법

특허권 침해의 기계장치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거래처의 공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침해여부를 감정할 수도,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은 공장내부의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시키되 고소장

에 '피고소인은 침해라고 추정되는 기계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특허 침해제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기재한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현장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확인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확인하게 한다.

이때 현장에 동행하여 기계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고소이유를 보충하면 될 것이다.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침해자는 창고를 자물쇠를 잠근채 도피중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침해제품의 주인만 찾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만다. 어찌할 것인가?

경찰관 입회하에 또는 종업원이나 이웃이 보는 상태에서 창고를 개방하고 침해물품을 확인해야 한다. 침해물품이 발견되면 수량을 헤아려 보관증을 맡기거나 게시하고 수거하여 보관한 후 고소를 제기한다.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침해행위를 제시해야할 현실적 위급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가 침해물건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존조치하는 것은 자구행위(自救行爲)로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소위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없는 한 절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과감한 실행에는 충분하고 깊은 법률적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기 행동을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책임이 법률상 면제된다는 자신감이 요구되는 것이다.

6. 추가고소 · 고소의 취소 · 재고소

가. 추가고소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감정서를 제출하고 특허무효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한 상태에서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까? 이미 고소한 상태이므로 고소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하릴 없이 수사가 종결되기만 기다려 보았다. 그런데 3개월정도 지난후 합의를 권고한다. 권고가 아니라 종용처럼 느껴진다.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침해, 의장권침해는 친고죄(親告罪)이다. 피해자(특허권자)가 몸소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유죄를 선고 받는 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의 권익이 유린된 상태의 합의는 사실상 일방적인 양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 많은 고소사건에 시달리는 경찰관과 검찰관은 특히 친고죄이며 기술적 판단이 전제되는 특허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현실적 사정이 있다.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인구에 비례한 고소사건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124배에 달한다고 한다. 고소권의 남용이다. 이러한 통계 숫자는 우리의 수사기관이 넘치는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시달리고 있으며 수사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수사력의 분산은 필경 하나하나의 사건에 깊이있고 치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특허권침해사건은 소홀히 다루어 지거나 '처리하기에 귀찮은 사건', '합의시켜 종결해야 할 사건', '합의할 때까지 미루게 되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침해자가 고소이후에도 계속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추가고소(追加告訴)를 활용해야 한다.

추가고소란 범죄사실의 추가를 말한다. 예컨대 1997. 8. 18자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범죄사실은 고소일인 1997. 8. 18이전의 침해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는 새로운 고소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추가에 해당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한 계속하여 또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추가고소장은 일반 고소장과 같으나 명칭을 '추가고소장'이라고 적고 그이래 (범죄사실의 추가)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범죄사실은 이미 제출한 고소일 이후의 침해사실을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추가고소장에 먼저 제출한 고소사건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추가고소장을 먼저 제출한 고소장과 1건으로 합쳐져 수사가 진행된다.

추가고소를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귀찮은 것은 상대적인 느낌으로서 자기의 자유로움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에 비하면 번거로운 것이나 상대방(침해자)가 겪는 고통과 비한다면 그만큼 권리자는 덜 번거롭고 심적부담도 적은 것이다.

나. 고소의 취소와 재고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가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이 사실상 종료된다. 고소가 취소되면 특허권침해사건은 '공소권(公訴權) 없음'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처분

이나 판결을 내리게 된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이 규정에 대하여 오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특허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로는 고소 취소를 피하게 되며, 침해자도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앞으로 적당한 기회를 보아 침해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고소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의 요구이며 범죄 사실이란 고소장에 기재된 또는 고소취소전까지의 범죄사실에 한정된다. 따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과거의 침해행위를 문제삼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고소하지도 않은 그리고 고소할 수도 없었던 장래의 침해행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합의 조건에 맞으면 과감히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 다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가서 다시 고소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7. 즉시범과 계속범, 범죄수

즉시범(即時犯)이라 함은 침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곧 범죄가 완성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살인죄, 절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속한다. 계속범(繼續犯)이라 함은 침해사실이 다소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계속범에 있어서는 침해상태가 계속하는 동안 범죄사실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아니한다. 체포감금죄(逮捕監禁罪)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특허권침해는 보통 즉시범으로 보나 제조나 판

매행위 또는 사용행위가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연속범(連續犯)내지는 접속범(接續犯)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특허침해품을 계속 생산하거나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체의 행위를 하나의 집합체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하게 된다. 또한 타인의 등록 상표나 등록서비스표를 간판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태범(狀態犯)으로 보며 역시 하나의 죄로 처벌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침해의 성격에서 고소후의 범죄는 몇개의 범죄로 고소할 수 없고 하나의 범죄로 추가고소(범죄사실의 추가)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권 침해죄는 고소일로부터 시작하여 1심판결 종결시까지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보며 법률적으로는 범죄수가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에 있어서는 고소일로부터 약식명령서 송달일까지의 범죄사실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게된다.

참고적으로 정식재판은 당사자와 검사, 변호사가 참가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약식재판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함이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벌금형을 결정하고 피의자(침해자)가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1심판결 종결시까지 또는 약식명령서 송달전까지는 추가고소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고소를 제기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란다.

8. 나머지 말

이제까지 고소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활용지

식을 일별해 보았다. 그러나 고소와 관련된 문제는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압수수색과 증거확보, 구속과 구속적부심청구, 기소와 불기소, 항고와 재항고, 정식재판의 청구, 판결의 확정과 재심청구 등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이러한 점을 망라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루하기도 하려니와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되지 못한다.

형사고소는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률 수단이 되며 민사소송의 사실관계를 인정받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소송은 싸움이다. 고소도 도전이고 싸움이다. 과거에 외국에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한국사람이더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과

대화보다 감정적인 느낌과 체면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여 사실 싸움꺼리가 되지 않는 일에도 언쟁을 벌인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듯이 언어폭력을 능사로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소는 자칫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구한 후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소사건이 적은 나라는 안정되고 살맛나는 사회이다.

과중한 고소사건의 처리로 그리고 공연한 다툼을 일삼는 고소로 수사인력이 크게 소진된다면 결국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마는 현상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계속> **발특9709**

신간

변호사/변리사/법무사/기업법무팀/국제거래실무자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

제1편은 국제계약의 총론부분으로, 제1장에서는 국제계약의 의의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와 국제계약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제2장에서는 국제계약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도입과 그 절차 및 법령들을 국가별로 다루었으며, 제3장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을, 제4장은 지적재산권의 계약시에 주의 사항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의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를 타이틀에서 용명에 이르기까지를 條項別로 많은 예문과 해설, 실사례의 분석들로 구성하였다.

제3편의 제1장에서는 국제계약서를 분야별로 영문·일문·국문으로 작성하여, 중소기업이나 국제계약의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계약서 30여 가지를 모델로 소개하였고, 제2장은 국제계약서 체결 후 계약의 이행과 관리에 관하여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각국이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실제 심사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국제계약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저 자 : 윤선희(상지대 교수) 가격 : 38,000원

발행처 : 법률신문사(02)725-5187